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조정교부금 지급대상 확대〉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65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조정교부금 지급대상을 경륜등의 사업장까지 확대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오경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5. 3. 18.
3. 회부연월일 : 2025. 3.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재정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일정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음.

경마·경륜·경정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레저세는 시·도세로서 그 중 일부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경마·경륜·경정 등의 사업장(본장)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는 주거침해, 도박중독, 교육상 문제,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경마·경륜·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는 이러한 사회적비용의 부담에 더해 도로관리 및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 투자와 교통혼잡, 각종 불법행위, 주차문제, 교육상 문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민원 등의 발생으로 장외발매소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이에 경마·경륜·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함으로써 해당 시·군 및 자치구의 사회적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강화 및 건전한 레저문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제29조의2제3항).

Ⅲ. 검토의견

1. 조정교부금 지급대상을 경륜등의 사업장까지 확대

개정안은 경마·경륜·경정 등의 사업장(본장) 소재 시·군·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그 사업장(본장) 소재 시·군·구에 배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제29조의2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 ③ (생략)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지사는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이하 “승자투표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군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u>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u>	④ -----제43조* 각 호에 따라----- ----- ----- ----- ----- ----- -----그 경륜등의 사업장 및 장외발매소가 있는-----.

현행	개정안
* 「지방세법」 제43조(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42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경륜등의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에서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u>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u>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u>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장외발매소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u>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u>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모든 지방자치단체(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u>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 ② (생략) ③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등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u>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에 각각 배분</u>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43조 각 호에 따라 ----- ----- ----- ----- -----그 <u>경륜등의 사업장 및 장외발매소가 있는</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레저세 조정교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및 제2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레저세분부터 적용한다.	

(1) 레저세의 개요

레저세는 승자투표권 및 승마투표권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경마·경륜 등의 사행행위에 과세하는 간접세이며, 소비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경마, 경륜, 경정, 전통소싸움 등이고¹⁾, 납세의무자는 각 사행행위의 사업자들이며,²⁾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이고, 세율은 10%임.

레저세는 시·도세로서, 납부방법은 본장은 사업장 소재지 광역자치단체에 모두 신고·납부하고, 장외발매소는 본장과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각각 50%씩 신고·납부하며, 온라인발매는 본장소재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각각 50%씩 신고·납부함.

[레저세의 광역자치단체간 배분]

구분	배분비율	광역단체간 배분
본 장 발생분	100% →	본장 소재 광역단체
장외 발매소 발생분	50% →	본장 소재 광역단체
	50% →	장외 소재 광역단체
온라인 발생분	50% →	본장 소재 광역단체
	50% →	전국 광역단체

1) 경마(27), 경륜(17), 경정(16), 전통소싸움(1) / 본장 8, 장외 60

2) 한국마사회(경마), 국민체육진흥공단·부산시설공단 스포원·창원레포츠파크(경륜), 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 청도공영사업공사(소싸움)

(2) 검토의견

현행법은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해당 지역에 장외발매소가 위치함에 따라 교통체증, 쓰레기 방출, 흡연 및 음주, 소음 등의 사회적 비용 등에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외부 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기 위해 해당 시·군·자치구에 레저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것임.

그런데, 이와 같은 외부 불경제 효과는 장외발매소 뿐 만 아니라 사업장(본장)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레저세 20%를 배분받는 대상에 장외발매소에 사업장(본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는 사업장(본장)의 교통혼잡 및 주차문제, 각종 불법행위, 교육상 문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민원 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구체적으로 개정안이 반영된다면, 사업장(본장)은 레저세의 본장발생분의 20%, 장외발생분의 10% 및 온라인 발생분의 $10+\alpha\%$ 를, 장외발매소는 레저세의 장외발생분의 10%과 온라인 발생분의 $\beta\%$ 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받게 될 것임.

[개정안에 따른 조정교부금 배분 현황]

구분	세수 귀속 (실제 징수는 각 기초단체)	소재 기초단체 배분	
		현행	개정안
본장 발생분	본장 광역단체 100%	(신설)	<본장> 20%
장외 발생분	본장 광역단체 50%	(신설)	<본장> 10%(50%×20%)
	장외 광역단체 50%	장외 10%(50%×20%)	<장외> 10%(50%×20%)
온라인 발생분	본장 광역단체 50%	(신설)	<본장> 10%(50%×20%)
	전국 광역단체 50%		<본장> $\alpha\%$ (50%×안분비율 ¹⁾ ×20%) <장외> $\beta\%$ (50%×안분비율 ²⁾ ×20%)

주: 1) 본장이 속해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수를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수로 나눈 비율

2) 장외 발매소가 속해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수를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수로 나눈 비율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3)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레저세 징수 처리비용으로 사업장(본장) 및 장외발매소의 기초자치단체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는데,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군·자치구는 본장 외(장외발매소, 온라인)에서 발생한 레저세의 1.5%를 추가적으로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3) 「지방세징수법」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② 제1항의 시·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군·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현행법상 레저세 징수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① 본장에서 발생한 레저세의 3%는 본장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되고, ②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레저세는 각각 본장 및 장외소재 기초자치단체에게 1.5%씩 배분되며, ③ 온라인에서 발생한 레저세는 각각 본장 및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게 1.5%씩 배분됨. 즉, 본장 소재 기초자치단체는 이미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징수교부금을 교부받고 있으므로, 조정교부금까지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교부받을 필요성이 있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법상 레저세 징수 처리비용(징수교부금) 배분 현황]

구분	배분비율	광역단체간 배분	배분비율	징수교부금 교부
본장 발생분	100% →	본장 소재 광역단체	3% →	<u>본장 소재</u> <u>기초자치단체</u>
장외 발매소 발생분	50% →	본장 소재 광역단체	3% →	<u>본장 소재</u> <u>기초자치단체</u>
	50% →	장외 소재 광역단체	3% →	장외 소재 기초자치단체
온라인 발생분	50% →	본장 소재 광역단체	3% →	<u>본장 소재</u> <u>기초자치단체</u>
	50% →	전국 광역단체	3% →	전국 기초자치단체

한편, 개정안이 반영되면, 지방자치단체간 레저세 배분액 비중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므로, 자치단체간 이에 대한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본장 소재지는 이미 본장外 발생분(장외+온라인)의 1.5%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아 본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배려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재원변동은 각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3